

제221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행동강령

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檢 討 報 告 書

【장순원 의원 발의】



2020. 5. 11.

運 營 委 員 會

專 門 委 員

# 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행동강령

##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# 檢 討 報 告 書

### 1. 경 과

의안 제224호로 2020년 4월 22일 장순원 의원 외 3명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### 2. 제안이유

공직자 등이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소속 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과 「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」(대통령령)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내용을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외부강의 등의 신고에 대해서도 반영하려는 것임.

### 3. 주요내용

가. 신고대상 외부강의 규정 완화 및 신고기간 변경 (안 제20조제2항)

- 외부강의 등 →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
- 사전 → 사후 10일 이내

#### 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,  
「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」
- 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- 다. 입법예고(2020. 4. 21. ~ 4. 27.) : 의견 없음

#### 5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「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 과 「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」 개정(2020. 5.27. 시행)에 따라 의원의 신고대상 외부강의 범위와 신고기간을 변경하고자 제출된 안건임.
- 주요 내용은 안 제20조에서 신고대상 외부강의를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로 완화하고 신고기간을 사후 10일 이내로 변경 하였음.
- 본 조례안은 개정된 상위법령에 맞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.

# 참 고 자 료

## 1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(2020. 5.27. 시행)

**제14조(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)** ① 의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·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·홍보·토론회·세미나·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·강연·기고 등(이하 "외부강의등"이라 한다)의 대가로서 의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.

② 의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의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. 다만,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20. 4. 7.>

③ 삭제 <2020. 4. 7.>

④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의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의원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. <개정 2020. 4. 7.>

⑤ 의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의장에게 신고하고,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.

⑥ 의원은 제5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.

⑦ 의장은 의원이 과도한 외부강의등으로 인하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대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의 횟수 상한을 정할 수 있다.

⑧ 의원은 제7항에 따른 횟수 상한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